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6. 12. 20.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6년 11월 15일

나. 발 의 자 : 강북회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6일

라. 상정일자 :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6. 12. 5.)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강북회 의원)

가. 제안이유

- 구화(區花)인 목련, 구목(區木)인 은행나무, 구조(區鳥)인 청둥오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구화, 구목, 구조를 정함. (안 제1조)
- 구화는 목련, 구목은 은행나무, 구조는 청둥오리로 함. (안 제2조)
- 구화, 구목, 구조는 각종 인쇄물,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 (안 제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민기)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상징물인 구화(區花), 구목(區木), 구조(區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상징물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구화(區花)인 목련은 봄에 앞보다 먼저 피어나는 흰 꽃으로 순결하고 청초한 느낌을 주어 영등포구민의 정서를 대변하며, 구목(區木)인 은행나무는 가을에 미려하고 청량감을 주며 수명이 길어 거목으로 성장하므로 영등포의 무한한 발전을 상징하고, 구조(區鳥)인 청둥오리는 한강의 밤섬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겨울철새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함께하는 영등포와 어울림.
- 이와 같이 영등포의 정서와 어울리고 의미가 깊은 상징물을 영등포구를 홍보하는데 활용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상징물을 명문화하고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입법예고기간 중에 집행부(홍보전산과)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 하였으며, 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4. 수정안 요지

#### 가. 수정이유

- 영등포구의 상징물을 홍보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인쇄물, 물품, 의식을 대표적으로 명시하였으나, 디지털 시대에 인쇄물보다 영상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됨으로써 영등포구의 상징물 사용조항에 홍보물을 추가하여 다각적으로 우리  
구의 이미지를 활용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 중 “각종 인쇄물”을 “각종 홍보물, 인쇄물”로 함.

####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86
----------	-----------

발의년월일 : 2016. 11. 15.

발 의 자 : 강북희 의원 외 3명

## 1. 수정이유

- 영등포구의 상징물을 홍보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인쇄물, 물품, 의식을 대표적으로 명시하였으나, 디지털시대에 인쇄물보다 영상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됨으로써, 영등포구의 상징물 사용조항에 홍보물을 추가하여 다각적으로 우리 구의 이미지를 활용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안 제3조 중 “각종 인쇄물” 을 “각종 홍보물, 인쇄물” 로 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 중 “각종 인쇄물” 을 “각종 홍보물, 인쇄물” 로 함.

#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구화(區花), 구목(區木), 구조(區鳥)를 정하여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향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상징물) 구화는 “목련”, 구목은 “은행나무”, 구조는 “청둥오리”로 한다.</p> <p>제3조(사용) 구화, 구목, 구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각종 인쇄물, 물품과 의식</u> 등에 활용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명 (제정안과 같음)</p> <p>제1조(목적) (제정안과 같음)</p> <p>제2조(상징물) (제정안과 같음)</p> <p>제3조(사용) _____ _____ <u>각종 홍보물, 인쇄물,</u> _____ _____.</p>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

(강북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
----------	-----

발의년월일: 2016년 11월 일

발 의 자: 강북회 의원 외

3명

## 1. 제안이유

- 구화(區花)인 목련, 구목(區木)인 은행나무, 구조(區鳥)인 청둥오리는 영등포구를 알리는 상징물임에도 이를 알고 있는 구민이 많지 않고, 대내·외적인 상징성도 떨어짐.
- 따라서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영등포구를 홍보하는 상징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구화, 구목, 구조를 정함. (안 제1조)
- 구화는 목련, 구목은 은행나무, 구조는 청둥오리로 함. (안 제2조)
- 구화, 구목, 구조는 각종 인쇄물,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 (안 제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구화(區花), 구목(區木), 구조(區鳥)를 정하여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향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 구화는 “목련”, 구목은 “은행나무”, 구조는 “청둥오리”로 한다.

제3조(사용) 구화, 구목, 구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인쇄물,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